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4. 10. 10.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7. 최은하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10. 1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 가.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기타

가) 입법예고 : 2024. 9. 23 ~ 2024. 9. 30. (의견 없음)

나)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없음.

###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 가. 조례 제정 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위임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경감의 재량권을 규정하고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발생에 따른 안전시설을 해당 사업자가 우선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내 충전시설 설치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등으로 본칙 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 정의의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sup>1)</sup>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차량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전기충전시설의 전

1)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만 한정하였음.

- 안 제4조 충전시설 설치·운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안전시설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전용주차구역에 사업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종합의견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지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sup>2)</sup>,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등과 관련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책무로 규정할 수 없음.
- 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반영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아울러,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따른 사회적 관심 사항을 반영한 안전시설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는 광역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화재확산 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안전시설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표 1. 관내 공공건축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연번	1. 시설현황				2. 충전기 현황		
	시설명	주소	형태	주차면수	완속	급속	비고
1	구청종합청사	월드컵로 212	부설	364	16	4	
2	창천공영	백범로1길 56	시설	280	6	1	
3	상암 1	성암로 197	시설	208	2	2	
4	중앙도서관	성산로 128	시설	193	2	2	
5	마포아트센터	대흥로20길 28	부설	155	3		
6	망원1-2	포은로6길 10	시설	148	3		
7	망원나들목A동	망원동 460-5번지 일대	거주자	141		6	
8	염리	큰우물로 61	시설	135		5	
9	양화진	토정로 2	시설	130	4		
10	소금나루도서관	송문길 72	시설	118		8	현대자동차 설치(4대)
11	한 서	송문12길 53	거주자	111	3		
12	연 남	동교로 235-1~동교로 267	노상	74			
13	공덕1-1	효창목길 31	거주자	81	3		
14	동교동	와우산로149-와우산로29길 72	노상	72			
15	망원	희우정로 68~123	노상	70			
16	망원1-1	망원로 28	거주자	68	2		
17	청기와	월드컵로10길 23-잔다리로 133	노상	66			
18	도화	도화길 37	시설	63	2		
19	망원나들목B동	망원동 460-5번지 일대	시설	62	3		
20	망원2-1	망원로3길 24	거주자	62	2		
21	성산2-1	모래내로 31	거주자	59	2		
22	구민체육센터	월드컵로25길 190	부설	57	2		
23	공덕1-2	만리재로14길 39	거주자	56	3		
24	용강	토정로 272~ 319	노상	52		2	
25	각 동주민센터	-	부설	242	17		
26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대흥로24길 50	시설	43		1	

※ 소금나루도서관에 설치된 충전기 8개 중 4개를 현대자동차에서 설치·운영

<표 2.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현황>

년도	임대료	비고
2022	14,715,000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부과금액
2023	14,715,000원	
2024	34,115,000원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한 금액
2025	7,027,600원(예정)	35,138,000원 부과 예정이나 조례가 시행되면 최대 80% 경감 (※ 경감예상액 28,110,400원)

#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